

# kiri Weekly

2012.4.23 제179호

## 이슈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 포커스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 금융보험 해설

생명보험의 이해 4: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 국내금융 뉴스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추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세 가속화

##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심각해진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 부유층 증세 논란 확대  
유럽 \_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와 국채 투자 감소의 악순환 지속 전망  
일본 \_ 미츠이 스미토모, 아시아 생명보험시장 진출 가속화  
중국 \_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한 상반된 평가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김해식 연구위원 / 조재린 연구위원

## 요약

■ 2008년에 시작한 미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 2012년 말까지 SMI에 상정된 의제의 대부분이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로 구체화될 예정임. 미국의 SMI가 추진된 배경은 국내 보험시장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더구나 현행 국내 감독은 유럽연합의 Solvency II(이하 EU S2)를 준거 모델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RBC를 축으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 SMI의 추진과 성과가 국내 감독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

미국 SMI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감독체계라는 점, 둘째,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임. 이에 따라 자본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그룹감독, 회계와 재보험에 이르는 이슈들이 망라되고 전사 및 그룹 차원의 상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SMI가 진행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EU S2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관찰과 이해가 필요해 보임.

SMI는 부실 보험회사 통제 수단으로서 RBC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RBC 표준모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RBC 규제보다는 상시감독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보고(ORSA)에 주목하고 있음. ORSA는 보험회사 스스로 경영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본을 관리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임. ORSA는 그룹감독에서도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모델법이 2012년 하반기에는 제시될 예정임.

또한, 그룹감독에서는 위험의 전이와 관련하여 관계회사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이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보 접근과 검사 강화, 그리고 지주회사가 전사리스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 다만, 감독회계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의 변화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규제리스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EU S2나 미국 SMI 모두 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함으로써 규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임.

## 1. 검토 배경



-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준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자국의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2008년 G20 정상회담에서 모든 회원국이 IMF를 통해 자국의 금융시장과 감독체계를 점검하고 평가받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됨.<sup>1)</sup>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국제보험감독원칙<sup>2)</sup>과 회원국의 감독법규를 상호 평가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함.
  
- 보험권에서도 BIS와 유사하게 국제기준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다국적 보험그룹(I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을 대상으로 진행 중임.
  - AIG 사례 등을 통해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그룹차원의 감독과 이를 위한 여러 금융권역의 감독자들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IAIS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감독 체계(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IGs)를 마련 중임.<sup>3)</sup>
  
- 세계 보험산업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등장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Solvency II(이하 'EU S2'이라 함)는 또다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과 금융자산을 새롭게 분류하고 평가하는 국제금융회계기준(IFRS9) 등은 보험회사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의 변화를 수반함.
  - EU는 “동등성평가제<sup>4)</sup>”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EU S2와 유사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함.

1) 2008년 11월 G20 Financial Summit declaration, IMF는 미국에 대한 FSAP 보고서를 2010년에 공표

2) 김해식·임준환(2011. 10. 10),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3) 이승준(2011. 1. 17), 「IAIS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4) 재무건전성 감독체계가 EU S2와 유사한 국가의 재보험회사나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EU 보험회사의 자회사에만 EU S2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임.

## 2. 미국의 SMI 추진



■ 미국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을 2008년 6월 부터 추진<sup>5)</sup>함.

-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sup>6)</sup>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보험감독 및 은행감독, 회계 부문의 국제적 논의를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기 위한 SMI 로드맵을 마련함.
- 한편, 연방정부는 시스템위험에 대응할 목적으로 Dodd-Frank Act(2010)를 통해 재무부에 연방 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을 설치하여 주 단위 보험감독체계를 보완<sup>7)</sup>함.

■ 미국의 개혁 작업은 EU S2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다는 점이 특징임.

- NAIC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그룹감독,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재무보고,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작업반을 운영함.

〈표 1〉 미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의 의제

| 주요 의제       | 세부 의제  |
|-------------|--|
| 자기자본규제      | • 자본적정성  |
|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 • 기업지배구조<br>• 그룹지급능력   |
| 그룹감독        | • 그룹지급능력   |
|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 | • 국제적인 지급능력평가 및 회계기준<br>•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Principle-based Reserving) |
| 재보험         | • 재보험  |

자료: NAIC(2012. 3. 29),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Roadmap".

5) NAIC(2008. 6. 2), "Regulators Adopt Solvency Work Plan".

6)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단위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주 보험감독관들의 모임인 NAIC가 모델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주가 주법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공통의 감독기준이 형성되고 있음.

7) 조용운(2010. 6. 28),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및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NAIC는 2012년까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틀과 핵심원칙을 정비하고 기존 그룹감독 체계를 재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 NAIC는 IAIS의 국제보험감독기준을 반영하여 2010년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원칙(US Insurance Financial Solvency Core Principles)을 제시함.

〈표 2〉 미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감독기준(2010)

| 조항  | 내용                      |
|-----|-------------------------|
| 제1조 | 감독당국에 보고, 공시 및 투명성      |
| 제2조 | 상시감독과 분석                |
| 제3조 | 리스크중심 현장검사              |
| 제4조 | 준비금,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       |
| 제5조 | 중요한 리스크 관련 거래/활동에 대한 감독 |
| 제6조 | 적기 시정조치                 |
| 제7조 | 보험회사 퇴출 및 관리            |

자료: NAIC(2010, 2, 19), "The United States Insurance Financial Solvency Framework".

- 한편, 해외 건전성 감독체계와 비교를 통해 SMI에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독보고(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자본계층화, 내부모형,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그룹감독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반영함.

〈표 3〉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방향

| 주요 의제       | 개혁 방향   |
|-------------|---|
| 자기자본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및 추세 분석</li> <li>• 대재해 등 위험 추가 반영</li> </ul>                                      |
|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배구조 요강 채택</li> <li>• ORSA 지침(Guidance Manual) 채택</li> </ul>                         |
| 그룹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모델법규(#440, #450) 개정</li> <li>• 감독협의체 구성 및 이행 문서화</li> </ul>                        |
| 감독 및 재무 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책임준비금모델법(#820) 채택: 가치평가지침(VM20) 작업 중</li> <li>•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에 대한 현장영향평가 실시</li> </ul> |
| 재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험인정모델법규(#785, #786) 채택</li> </ul>  |

자료: NAIC(2012, 3, 29),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Roadmap".

### 3. 미국 SMI의 성과



- NAIC는 보험회사 요구 자본에 대한 감독수단인 RBC(Risk-Based Capital) 표준모형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함.
  - RBC 표준모형에 대해서는 표준위험계수와 방법론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향후 위험 분산 방법론과 보험회계 및 재보험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주력하기로 함.
    - 손해보험의 대재해 위험, 투자위험, 재보험의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를 완료함.
    - 위험분산 방법론과 신뢰수준 등 표준모형 수정안 제시는 201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RBC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적기 감독조치에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RBC 내부모형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자사의 위험관리 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본을 관리하는 ORSA와 구분됨.
  
- 2010년 기존 지배구조요강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모범규범을 제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임.
  - IMF의 FSAP 보고서는 미국 보험규제가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에 관한 국제보험감독원칙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주요 지적사항은 핵심 임원의 배경 및 경험과 관련한 적격성 기준의 결함, 적격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결여, 모범 관행에 대한 추가적 지침 결여, 내부감사기능의 요건 미비, 위험관리 체계 유지에 대한 요건 명시 결여 등임.
  - NAIC는 ORSA 매뉴얼을 제시하고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델법을 2012년 6월까지 제안할 예정임.
  
- NAIC는 2010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를 개정하고 감독협의체 구성과 모니터링 수단에 초점을 맞춰 그룹단위 감독의 틀을 재정비함.
  - 현행 그룹감독에서는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sup>8)</sup>와 NAIC 재무 분석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음.

8)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Model#440) and Model Regulation(Model#450),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NAIC는 그룹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창(clearer windows)」과 그룹 내 위험 전이를 방지할 「벽(walls)」을 강화한다는 “Windows and Walls” 개념을 도입하였음.
    - 감독자들 간 의사소통 강화와 감독협의체 구성, 감독자의 정보 접근/집적, 이행강제권 강화, 그룹의 자본평가에 주력함.
  - 특히, 자회사 성과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재정비하였음.
    - 전사위험보고서(Form F)를 통해 보험그룹 내에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자에게 부여
- 준비금의 경우 2009년 「표준책임 준비금 모델법」이 개정되면서<sup>9)</sup> 「원칙중심 준비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국제회계기준의 감독회계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은 현장 영향 평가가 완료되었고 시행계획도 수립된 상황으로, 가치평가매뉴얼(Valuation Manual 20)이 2012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하여 보험감독회계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선 향후 정책, 국제회계기준의 영향, 공시 정도와 감독 보고, 국제보험감독기준의 준수, 해외 감독자와의 의사소통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
- 재보험에 대해서는 역외 재보험거래와 경쟁을 촉진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선함.
- Dodd-Frank Act(2010)는 재보험 규제에 영향을 줄 재보험개혁법<sup>10)</sup>을 제시<sup>11)</sup>함.
    - 재보험개혁법은 출재보험회사의 본사가 있는 주가 출재 재보험의 준비금 경감을 인정하면 다른 주가 그 경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외 재보험 거래 촉진이 주된 목적임.
  - 2012년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를 논의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정 재보험모델법규<sup>12)</sup>에 포함될 담보금액을 2012년 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함.

9) Standard Valuation Law(Model #820).

10) Non-admitted and Reinsurance Reform Act(NRRA).

11) 송운아(2010. 12. 27), 「미국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12) Credit for Model Law(#785) and Regulation(#786).

## 4. 미국의 개혁 작업과 시사점



-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에서 EU S2가 준거 모델이 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미국 RBC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혁 작업은 EU S2의 변화를 기존 RBC 체계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도 대외적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감독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IMF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FSAP 평가, 국내 감독법규와 국제보험감독기준 및 EU S2와의 비교평가 요구 등도 국내 감독제도의 개혁을 재촉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SMI 의제 중에서 보험회사 및 그룹감독의 주요 감독수단으로서 제시된 ORSA와 그룹감독의 틀은 국내 감독제도의 개선에서도 주목해야 부분임.
  - RBC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본과 부실 보험회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ORSA는 보험회사가 장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와 ORSA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룹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이를 포괄하는 그룹감독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감독의 연장선상에서 지주회사 감독 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보험감독에서도 국내외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나,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RBC의 본격 시행과 함께 자본계층화 등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는 한편, 상시 감독수단이 리스크평가제도(RAAS)로 일원화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규제리스크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래 변화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 전개된 EU S2나 SMI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kiqi](#)